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

2017. 12.



목 차

1.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1
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6
3. 의료인 결격사유 7
4. 의료인 등 폭행·협박 금지 ······ 8
5.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 9
6. 진단서, 처방전 등 발행 10
□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단서 발행
□ 진단서 발급의 시기 및 대상
□ 미성년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발급 및 서명날인의 주체(진찰한 의사인지 의료기관
개설자인지)
□ 보험회사 직원의 의사에 대한 소견서 발급 요구
□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 비용
부담
7.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18
□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의 원칙
□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
의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
임 가능 여부
8. 진단서 및 제증명서 발급 비용 28
□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진료사본 발급 요구시	
9. 진료기록부	34
10.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39
11. 무면허 의료행위	41
12. 환자유인행위 금지	43
13.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행위	45
14. 의료기관 개설 주체	47
15. 중복 개설 금지	50
16.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시 처벌 수위!	51
17. 비의료인 의료광고 및 의료인 과장광고!	55
18.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59
19.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61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의 의료행위 등 관련 행정처분	
□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행정처분	
□ 진료비 거짓 청구 관련 행정처분	
[별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

1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 무화 하는 의료법이 2017.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 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 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 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바, 2017. 5. 11.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공포되었으므로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됩니다.
- □ 명찰 착용 대상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 의료기관 내 사무장·코디네이터·피부관리사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력 등은 명찰패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해 서 명찰을 착용하면 됩니다.
- □ 명찰착용 가이드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관련]

-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붙임자료 #2】 의 아래 표의 기준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찰을 표시하면 됩 니다. 즉 기준만 충족하면, 뒤에 "의사(원장)" 또는 전문의인 경우, "내과 교수, 내과 과장" 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기준사항(표 참조)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착용대상	기준 (최소	≟규정)	예시	
	의사	(<mark>공통)</mark>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의사 홍길동(○)</u> - 원장 홍길동(※) - Dr. 홍길동(※)	
의료인	(의, 치, 한)	(<mark>전문의 경우</mark>) 전문과목별 명칭+성명		- <u>내과</u> 의사 <u>홍길동(〇)</u> - <u>내과</u> 교수 <u>홍길동(〇)</u> -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〇)</u>	
	간호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간호사</u> <u>홍길동</u> (○) - RN 홍길동(※)	
	조산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조산사</u> 홍길동(○)	
학생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 <u>의과대학생</u> 홍 <u>길동(○)</u> - <u>의학전문대학원생</u> <u>홍길동(○)</u> - 학생 홍길동(※)	
의료 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성명		- <u>물리치료사</u> <u>홍길동(○)</u> - 물치사 홍길동(※)	
간호 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성명		- <u>간호조무사</u> 홍 <u>길동</u> (○) - 간조사 홍길동(※) - AN 홍길동(※)	
		[추 기	예시]		
	가능			불가능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홍길	<u>일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원장 홍길동 (🗶)		
	- (의료기관 명칭) 원장 <u>의</u>	<u>사</u>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대표원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대	표원장 <u>홍길동</u> (O)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Dr	.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	경칭) <u>의사</u> Gil-Dong Hong (✖)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Doctor) <u>홍</u>	길동(Gil-Dong Hong)(O)			
일반의	- (의료기관 명칭) 의사 (醫師) 홍길동 (洪吉童)(〇)		- **Hospital Doctor Hong (*)		
	→ 고시 제1조 제6항에 따라 현	한글로 기재함이 원칙,	, - (의료기관 명칭) Doctor 홍길동 (✗)		
	영어 병기 가능		- (의료기관 명칭) Dr. 홍길동 (🗴)		
			- (의료기관 명	령칭) Staff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	령칭) 醫師 洪吉童 (※)	

	- (의료기관 명칭) 수면장애클리닉 <u>의사 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건강의학센터 <u>의사 홍길동</u> (○) → 고시 제3조에 따라 소속부서명, 직위·직급을 추 가표시 가능	
	- (의료기관 명칭) 원장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교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u>홍길동(</u> x) → 법에서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신분 을 나타내는 '의사, 교수, 전문의 등'의 신분 명칭을 추가해야함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원장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대표원장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사 <u>홍길동</u> (*)
전문의 <u>*전문의</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과장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진료과장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진료부원장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진료부원장 <u>홍길동(</u> ※)
는 위의 '일반의' 예시를 포함하	-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u>내과</u> 교수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u>내과</u> 과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교수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u>홍길동(</u> ×)
<u>역</u> <u>사용가</u> 능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과장 Dr.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교수 Professor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Prof.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Heart specialist <u>홍길동(</u> x) - (의료기관 명칭) 專門醫 <u>홍길동(</u> x)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Professor <u>홍길동(</u> x)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Prof. <u>홍길동(</u> x)
학생 및 수련의 등	- (대학교 명칭) <u>의과대학생 홍길동(〇)</u> - (대학교 명칭) <u>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내과(전공의) <u>의사 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내과(인턴) <u>의사 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내과(레지던트) <u>의사</u> 홍길동(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 Dr.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학생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인턴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레지던트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전공의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의대생 <u>홍길동(</u> *) - (대학교 명칭) 의대 <u>홍길동(</u> *) - (대학교 명칭) 의대 <u>홍길동(</u> *) - (대학교 명칭) 대학원생 <u>홍길동(</u> *)
기타	- (의료기관 명칭) <u>간호사 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ICU(중환자실)간호과 <u>간호사 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간호사</u> / 간호과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 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u> 실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u> 실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실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physical therapist <u>홍길동</u> (★)

- □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관련]
- 가운의 자수와 목걸이 등 두 개 이상의 명찰을 패용하였을 시에, 동 규정에 따른 기준(명찰표시 내용)에 맞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패용하여야 하 며, 이외의 추가적인 패용의 경우 기재사항 등의 법적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수와 목걸이 두 가지 방식 으로 명찰을 패용하는 경우 의사 가운에 '의사 홍길동' 혹은 '내과전문의 홍길동'이라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목걸이 패 용방식의 명찰에 '원장 홍길동'이라 표기하여도 기준위반 등 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다만, 두 개의 명찰 패용 시 표시기준 등 법적기재사항을 지 킨 명찰의 분실 또는 훼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없게 가려진 상황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소 지 또한 있는바, 가급적 패용된 모든 명찰방식을 법적 표시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 □ 명찰착용 예외[의료법 제4조 제5항 관련]
-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 □ 명찰의 표시 방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관련]
-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

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위의 규정 위반시 일정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2 제2호 하목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명찰관련 사항을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있다. <신설 2016.5.29.>

제6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	하는 것을	금지하	는 규	정이	신설되9	었습니	다.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이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 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 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합니다.

□ 벌칙

○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되며 (제66조 제1항 제2의2호), 특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오니(제65조 제1항 제6호)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관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음.

3 의료인 결격사유

- □ 의료인이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 □ 주의할 것은 <u>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u> <u>받은 자에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u> <u>료인 또한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해당</u>한다는 점입니다.
-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8조 <i>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i><u>사유</u></i> 에 해당된 경우	제1호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

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 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인 등 폭행협박 금지

□ 의료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 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벌칙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87조제1항제2호) 다만, 제12 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설 2016.5.29.>

5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 □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움
 (2000. 6. 2. 의정 65507-704)
 - ㅇ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이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한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한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제10호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법조문

6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진단세, 처방전 등 발행

□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단서 발행

- 의료업에 종사하고 <u>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u>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함)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

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 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 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에 위반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의 시기 및 대상

- <u>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도</u> <u>포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되어</u> 야 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 면 환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 다만, <u>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이나 과거 진료기</u> <u>록부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 발급은 추가적인 진료 없이</u> 의 료법 제21조에 따라 <u>진료기록부의 내용확인을 통해서 발급받</u> 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u>진단서의 최초 발급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u> 후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작성되는 진료확인서 등은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자의 친족이나 제3자도 요청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또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진단서를 발급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를 발급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③ 환자와 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지 서식 참조]

□ 미성년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5호의2서식] 작성방법상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u>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u> <u>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에 본인에게</u> <u>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u>이며, <u>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u> <u>은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진</u> <u>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u>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만 10 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 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 진단서 발급 및 서명날인의 주체(진찰한 의사인지 의료기관 개설자인지)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고

¹⁾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u>서명</u>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진찰 의사가 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봉직의인지 개설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착오로 자신이 발급한 환자진단서에 개설자의 날인을 한 경우, 개설자인의사가 의료법 제18조제1항2)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교부하는 진단서에 착오로 자신의 서명날인 대신 개설자인 의사 명의의 날인을 행한 것은, 개설자인 의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개설자인 의사가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동 진단서를 교부한 대진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보건복지부 의정65500 563(1999.6.5.)]』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사가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만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4)와 관련 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8조제1항5)의 규정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에서 질의한 소견서의 경우 그 소견서를 작성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다른 의료인이 진찰 또는 검안한 진단서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소견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

²⁾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

³⁾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상을 받기 위해 진단서(예 :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이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만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이 소견서가 진단서를 뒤엎을 수 있는지 여부

⁵⁾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음.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의정 65507 - 628호('95. 5. 29)]

□ 보험회사 직원의 의사에 대한 소견서 발급 요구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의사는 환자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함)에게 진단서・감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있습니다.
- 이에 소견서는 진단서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아무리 발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발급하시면 안됩니다. 단,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 요구시에는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하는 진단서외에 기존 발급된 진단서 부본, 진료기록등에 대한 복사 및 열람 요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절차가 합당한 경우 수용가능합니다.
- □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 비용 부담
- 보험회사가 "환자를 통해" 소견서의 발급 요구한 경우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 니다.
- 소견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이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소견서 및 촉탁서 (고시 제2000-73허 '01.1.1 시행)』에 의거,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이에 반하여,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따라 명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서명날인 한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건의료정책팀-4073호, '06.10.10)에 의거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일반 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교부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를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과정의 일환으로 발급되는소견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 부담이 불가하나,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벌칙

○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17조제3항·제4항을 위

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2개월</u>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제10호	
발급한 경우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66조제1항	<i>자격정지 3개월</i>
<u>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u>	제3호	
<i>로 작성</i> 하여 발급한 경우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하여 <i>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i>	제10호	
<i>서 또는 중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i> 한		
경우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 (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 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 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 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 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 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 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건안서 또는 증명서 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 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 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5. 입원·퇴원 연월일
 -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 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3. 입원의 필요 여부
- 4. 외과적 수술 여부
-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 7. 식사의 가능 여부
- 8. 상해에 대한 소견
- 9 치료기간
-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의 원칙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

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 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 줄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이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 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 의료법 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행 의료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제출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이익이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6, 이에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진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 처

⁶⁾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관련 근거 공문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지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수사협조를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개별 환자기록을 임의제출하려 한다면,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7)

□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불허하고, 법정대리인에게만 신청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그 해석을 변경하여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의사능력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⁷⁾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형사 영장, 민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장,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위 표 11항),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⁸⁾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또한 기존에는 <u>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u>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u> 사본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u>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10) 발급</u>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한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되며, 단,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 환자 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불가한 상황에서도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을 불허하고,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신청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환자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이는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사본 발급 신청이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의료법 시행규칙」[별표 2

¹⁰⁾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의2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 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망 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환자 친족의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 사망한 환자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복대리인 선임을 불허하였으나, 향후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u>토록 하였습니다. 단 이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재위임에 대한 환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 만, 구비서류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 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

- 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11)
- 사본발급 재위임을 위한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통 상적으로 대리인 선임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벌칙

○ 제21조 제2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함)(제88조), 제21 조 제1항 후단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전 단계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i>환자에</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2개월</u>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제10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		
<u>은 때</u> 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제66조제1항	<i>자격정지 15일</i>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	제10호	
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i>진료기</i>		
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u>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u>		
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		

¹¹⁾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등 작성을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 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 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하는 경우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 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 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 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 게 보내는 경우

-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 ⑤ 삭제 <2016.12.2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

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 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6.12.29.>]

진단서 및 제증명서 발급 비용

□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의료법」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2017. 9. 19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66호, 2017. 9. 21. 시행)이 제정되었습니다.
- 동 고시에 따라 별표에 따라 책정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 료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주)} (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 로 능 력 평 가 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 애 진 단 서 (신 체 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 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연 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주)} (원)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 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 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 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 후 진 료 비 추 정 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 후 진 료 비 추 정 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 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 용 신 체 검 사 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	40,000

연 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주)} (원)
	(공무원)		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 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24	채 용 신 처 (일반)	∥검사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 료 기 (1~5매)	록 사 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 매 이상)	사본 (6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 름)	·영상(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	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 료 기 (DVD)	록 영 상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 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 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 /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
-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 명칭,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 금액 기준이 적용되나,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 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

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으며, 다만, 「의료법」제45조제2 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 고 있습니다.12)

○ 한편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3)

□ 보험회사 직원의 환자 진료사본 발급 요구시

-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하면서 의사 면담을 요청하여 해당 환자의 병명, 질환상태, 예후, 기타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직원에게 별도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직원에게 환자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 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원본에서 환자의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등)를 가리고 사본을 발급하여도 무방 합니다. 진료기록원본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14)

□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45조.......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12)「}의료법」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¹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제하 보도참고자료 발췌

¹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진료기록부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나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612 2016.9.21(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32 2017.1.13(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2239 2017.4.28(상고기각)]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제9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2.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법 제63조	시정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i>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i>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		
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u>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u>		
<u> 징수한 경우</u>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 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 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한다. <신설 2016.12.20.>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본조신설 2015.12.29.]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 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 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본조신설 2010.1.29.]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진료기록부

- □ 의료법 제22조에 의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또한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제·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이러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¹⁵)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¹⁵⁾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 거 일정기간16)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즉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u>할 수 있으며, 의료 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 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 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 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¹⁷)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

- 16) 1. 환자 명부 : 5년
 - 2. 진료기록부: 10년
 - 3. 처방전 : 2년
 - 4. 수술기록 : 10년
 -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7. 간호기록부 :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 17)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니다.

□ 주의할 점은 통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통상 전자차트라고 함)의 경우 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프로그램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자서명 등의장치를 필요한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 벌칙

○ 이를 위반한 경우 제22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22조 제1항·제2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3) 법 제22조제1항을 <i>위반하여 진료기록</i>	제66조제1	<u> 자격정지 15일</u>
<u>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u>	항제10호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i>진료기록</i>	법 제66조제	경 고
<u>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u>	1항제10호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i>진료기록부등</i>	법 제66조제	<u> 자격정지 1개월</u>
<i>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i>	1항제3호 및	
<u>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u>	제10호	
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 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 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 1. 환자 명부 : 5년
 - 2. 진료기록부: 10년
 - 3. 처방전 : 2년
 - 4. 수술기록: 10년
 -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7. 간호기록부: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 하여 보존할 것): 3년

-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 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6.]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 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 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 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 나. 잠금장치
-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 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 라. 재해예방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2.5.]

10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 2017년 6월 21일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행위를 할경우에는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②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③ 설명 하는 의사 및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④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부작용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 □ 또한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 과태료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주로 행하시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분쟁 발생으로 인한 설

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 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 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24조의2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11 무면이 의료행위

□ <u>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u>, <u>의료인</u> 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u> 의료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벌칙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6제1항제5	<u> 자격정지 3개월</u>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호 및 제10호	
<u>하게 하거나</u>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30) <i>면허중을 빌려준 경우</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제5호	
37) <i>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5일</u>
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제6호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i>의료인이</i>	제64조제1항제	<u>업무정지 3개월</u>
<u>나 의료기관 중사자가 무자격자에게</u>	2호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u>하게 한 경우</u>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 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12 환자유인행위 금지

-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 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 주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 환자유인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ㅇ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 환자유인행위 인정
- ㅇ 쿠폰 발행, 환자유인행위 인정
 - →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위에 규정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 있음
- ㅇ 포인트 적립, 환자유인행위 인정
-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하고, 공단급여비 청구하면, 환자유인행위 인정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 청구도 안하면 해당 사항 없음)
-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명칭 생략)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상담을 하거나 낙태수술 후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면으로 의료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사)이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알리지아니한 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빨리 피고인(의사)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는 의료정보의 제공과 그 상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약속과 권유 및 안내를 통하여 낙태수술 등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 → 환자유인행위 경품으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 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

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단순히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

□ 벌칙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i>영리를</i>	제66조제1항	<u>자격정지 2개월</u>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제10호	
<u>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u>		
<i>이를 사주하는 행위</i> 를 한 경우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 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

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사람은 제외한다]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 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조신설 2009.4.29.]

13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행위

-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행해서는 아니됩 니다.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대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백신을 접종한 사례 및 의료인이 교회에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한 사례에 대해 '의료기 관 외에서 의료업을 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 며, 또한 왕진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 당이 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진료(왕진)를 보는 행 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함.
-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비위생적인 진료환경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의료기관 외 의료업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5791 판결)

□ 벌칙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u>의료기</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u>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u>	제10호	
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		
<u> </u>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 1. 가호
 -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 3. 투약

- 4. 주사
-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6. 상담
-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 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9.>

4 의료기관 개설 주체

- □ 의료기관은 의사, 의료법인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포함)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 및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의료기기의 할부금과 월 임대료 및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위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

-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 2008. 12., 125쪽)
- ㅇ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 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 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 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 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 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 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인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 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ㆍ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ㆍ의료사업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8.20. 선고, 대법원 2012도 14360 판결)

□ 벌칙

○ 제33조 제2항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과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에 따 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됨)

- → 이 부분은 개설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이외에 도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개설자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실질 적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 이 부분은 봉직의나 간호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6) <u>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제2호	
4) 다음의 <i>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i>	해당 처분기준의	
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	<u> 3분의 2의</u>	
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	<u>범위에서 감경</u>	
서 진술·중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		
<u> </u>		
<u>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u>		
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교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2.2.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15 중복 개설 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할	수 없습니다	구 .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법제처 유권해석13-0051, 2013. 4.30.)

□ 벌칙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설자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2) <u>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u>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u>	제10호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없다. <신설 2012.2.1.>
-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16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시 처벌 수위

□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거

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ㅇ 처 벌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2항18) 및 제87조 제1항 제2호19)
- □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면허대여행위로써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현재 일반적으로 통칭되 는 사무장병원)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1항 제 2호[의료인(정범)]
 - ㅇ 처 벌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2항20) 및 제87조 제1항 제2호21)

¹⁸⁾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¹⁹⁾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호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빌려준 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4조 제4항22), 제87조 제1항 제1호
 -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 ·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23)
- □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어 의료기 관을 개설하였으나 의료인은 자신이 직접 진료할 목적으로 그리한 경우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다른 의료인 이 이중개설일 경우(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2항24)[다른 의료인(정범)] : 처벌규정 없음
 - ㅇ 처 벌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 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1)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2)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 23)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2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²⁰⁾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다른 의료인] : 이중개설시, 이중개설 아니면 처벌 없음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8항25)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or 자격정지 3개월
 -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 그러나 이 경우의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이중개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빌려준 의료인]
 - ① 형벌 : 의료법 제90조
 - ·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의료법 제90조26))
 - ·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없음
 - ② 행정처분:
 - · 비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 조 제1항 제2호²⁷))
 - · 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 없음
 - ③ 의료인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형법 제30조)

²⁵⁾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²⁶⁾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²⁷⁾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 빌려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 간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면 빌려준 의료인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인 경우)28이나 제8항(의료인인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²⁹⁾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여지가 있음.
- ※ 그러나 빌려준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 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비의료인인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처해짐.
- ※ 문제는 명의대여의사가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집행유예 포함해서), 당연히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의사가 비의료인 등에게 고용 되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반면 의료인 에게 고용된 경우는 행정처분 없음.
-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 조제5항)
-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17 비의료인 의료광고 및 의료인 과장 광고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²⁸⁾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²⁹⁾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 장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 벌칙

○ 만약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시에는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63조),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i>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i>	제64조제1항	<u>업무정지 1개월</u>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제5호	
<u>경우</u>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2개월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i>거짓된 내용</i>	제5호	
의 광고를 한 경우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i>과장된 내용</i>	제5호	
<i>의 광고</i> 를 한 경우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고를 한 경우	제5호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를 누락하는 광고
-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 로 표현되는 광고
-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위헌)
-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 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 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

여 광고하는 것

-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
-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 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 고하는 것
-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10.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 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8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 □ 2016. 5. 29.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 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 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하는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신 설되었습니다.
- □ 위의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보 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
- □ 또한 이 법 시행 전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부칙 제4 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설사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 도과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소 급하여 위법·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이 법 시행 전,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처분의 확정통지를 받기 전이므로, 개정법 시행 후에는 더 이상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이 법 시행 전,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확정통지를 받았으나, 실제처분 시점은 개정법 시행 후라 하더라도 이미 보건복지부 장

관의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받은 이상,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6. 5. 29.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3.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 · 제3호, 제36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 · 제9호 및 제92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의 의료행위 등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8) 법 제66조에 따른 <i>자격정지처분기</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제2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1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1) <u>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i>료행위를 한 경우</i>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1호	
32) <i>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2호	
33)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제66조제1항	경 고
진료를 한 경우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34) <i>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i>	제66조제1항	· 1차 위반 : 자격
<u> </u>	제1호 및 영	정지 1개월
	제32조제1항	· 2차 위반 : 자격
	제4호	정지 3개월
35) <i>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2개월</u>
<u>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u>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5호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i>부당한</i>	법 제66조제1항	부표 2와 같음
<u>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u>	제9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3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_	자격정지 12개월

□ 진료비 거짓 청구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제66조제1항	부표와 같음
속임수 등 <i>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i>	제7호	
<i>거짓 청구</i> 한 경우		

[부표 1]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월)

월평균 거	짓청구금액			거 짓 청	구 비 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보건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_	_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_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고

-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 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 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사항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	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본인(확인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자) (자필서명)

유 의 사 항

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자매가 작성합니다.

- 1.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 [별표 2의2]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